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8
----------	------

발의연월일 : 2024. 8. 5.

발 의 자 : 양문석 · 김우영 · 이기현
서미화 · 김문수 · 문진석
이건태 · 김승원 · 김재원
김현정 · 허성무 · 박해철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법률 제 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u>	<u><삭 제></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